

제24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2023. 8. 28.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96호로 2023년 8월 11일 우경란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청년 연령을 조례에 명시하여 청년 정책 대상을 명확히 하고, 청년 시설 공간사용에 대하여 사용료 근거를 마련해 효율적인 청년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청년의 날 기념을 위한 근거와 청년 정책 및 제안 발굴에 공헌한 자에 대해 포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목적에 상위법 명시(안 제1조)
- 나. 청년 연령 규정(안 제3조제1호)
- 다.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추가(안 제6조제2항)
- 라. 청년 시설 공간사용에 대한 사용료 근거 규정 신설(안 제22조제5항)
- 마. 청년의 날 기념을 위한 근거 규정 신설(안 제24조)
- 바. 청년 대상 포상 근거 규정 신설(안 제2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년기본법」, 「청년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3. 8. 10. ~ 8. 15.)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정의하는 청년의 기준 연령을 현행보다 상향하여 청년 정책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춰 조례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는 본 개정조례안이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을 근거로 함을 명시함.
- 안 제3조(정의)는 청년정책의 대상이 되는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조례에 명시하되 개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함. 현 조례는 청년에 대해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청년기본법」 제3조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하되 개별 법령에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안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서 “청년의 건강증진”을 항목에 추가함. “청년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은 상위 조례인 「서울

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현 조례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청년의 건강증진)에서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어 이를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추가한 것임.

- 안 제22조(청년 시설의 설치 및 운영)는 청년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시설의 사용료 요율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함.
- 안 제24조(청년의 날)는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¹⁾과 관련하여 행사 등을 실시 및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신설함.
- 안 제26조(포상)는 청년의 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 등을 위하여 공헌한 자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청년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하여 규정을 신설함.

○ 검토 결과

- 「청년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청년인구의 규모는 2011년 1,142만 3천여명에서 2020년 1,050만 4천여명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의 중위연령²⁾은 2003년에는 33.5세였으나 2023년에는 46.5세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의 연령과 관련하여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 왔음.

1)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날) ①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로 한다.

2)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

-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서울시 조례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는 2020년 개정을 통해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함으로써 청년 정책의 대상을 확대한 바 있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청년기본 조례 중 17개 자치구가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 청년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 연령(서울시 25개 자치구) (2023.8.14.기준)

연번	청년 연령	해당 자치구	비고
1	19세 이상 34세 이하	5개 자치구 (구로구, 마포구, 영등포구*, 용산구*, 중랑구)	영등포구와 용산구는 「청년기본법」에 따름
2	19세 이상 39세 이하	17개 자치구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노원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3	15세 이상 29세 이하	2개 자치구 (금천구, 동작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름
4	19세 이상 45세 이하	1개 자치구 (도봉구)	

- 본 개정조례안은 이와 같은 추세에 맞춰 영등포구 청년의 연령을 상향하여 정책 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 영등포구의 19세 이상 39세 이하 인구는 130,677명으로서 청년 연령 확대로 인해 30,909명이 대상자에 추가로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 밖에 개정조례안에서 신설하고 있는 내용들은 상위법인 「청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1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의 날)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한다.

2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날) ①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로 한다. <개정 2023. 6. 20.>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이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같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2022. 4. 20.>